

[별표 4] <개정 2009.3.26>

###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(제17조제1항)

| 점 용 목 적                     | 첨 부 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토지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<br>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천시설의 점용         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평면도(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)<br>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    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수리계산서(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,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<br>3. 표준구조물도<br>4. 개략공사비 산출서<br>5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<br>6. 실시계획설명서,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(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|
|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공사설명서<br>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토석·모래·자갈,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중단도 및 횡단도<br>3. 채취량산출서<br>4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케이트장 또는 유·도선장의 설치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설계서 및 도면(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·구적도를 포함합니다)<br>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<br>※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(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): 지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물의 재식           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<br>3. 나무심기계획도<br>4.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<br>5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설계서 및 도면(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·구적도를 포함합니다)<br>3. 사업계획서(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)<br>4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<br>※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(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): 지적도 |
| 선박의 운항                      | 1. 위치도(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)<br>2. 운항계획서(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)<br>3.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 고: 다른 법령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